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급차, 택배차 등 새롭게 운행기록에 분류가 필요한 자동차 유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표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2호 중 “구난형·특수작업형”을 “구난형·특수용도형”으로 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8까지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제1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③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면제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직전에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7(중전의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7제2항”을 “제31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의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별표 5에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백업 수집 주기 내)”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 내)	2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실시간
-------------------------------	---	----------------	-----

별표 5 비고 제5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

나. 백업 수집 주기 내의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의 표기방법

다. 비고 제5호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

별표 8 중 “(제31조의6제4항 관련)”을 “(제31조의7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항 목		자릿수	표기방법	표기시기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20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	최초 사용 시 등록
차대번호		17	영문(대문자)·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자동차 유형		2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
자동차 등록번호		12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빈칸은 ‘#’으로 표기)	"
운송사업자 등록번호		10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XXXYYZZZZZ)	"
운전자코드		18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으로 표기하고 중간자 ‘-’는 생략	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정
주행거리 (km)	일일주행거리	4	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범위: 0000~9999)	실시간
	누적주행거리	7	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범위: 0000000~9999999)	"
정보발생 일시		14	YYMMDDhhmmssss (연/월/일/시/분/0.01초)	"
차량속도(km/h)		3	범위: 000~255	"
분당 엔진회전수(RPM)		4	범위: 0000~9999	"
브레이크 신호		1	범위: 0(off) 또는 1(on)	"
차량위치 (GPS X, Y 좌표)	X	9	10진수로 표기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Y	9		
위성항법 장치(GPS) 방위각		3	범위: 0~360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가속도 (m/sec ²)	ΔV_x	6	범위: -100.0~+100.0	"
	ΔV_y	6		
기기 및 통신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내)		2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

비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

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

3. 분당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및 가속도는 운행기록장치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만 표기한다.

4.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5.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자동차 유형의 표기 방법

나. 백업 수집 주기 내의 기기 및 통신상태 코드의 표기방법

다. 비고 제5호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등(제31조의3제2항 관련)

1.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 가. 공무원 전문교육
- 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전문교육
- 다.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별 대상 및 시간

가. 공무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1) 국토교통부	가)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 직원 나) 영 제4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받은 부서의 전 직원	21시간 이상
2)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1시간 이상

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직원 나)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의 직원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의 직원	14시간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2시간 이상

다.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운행제한단속원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14시간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u>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u> 3. (생략) <u><신설></u>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구난형·특수용도형</u> ----- 3.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u> <u>1. 국토교통부</u> <u>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u>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② 법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이 조</u>

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
육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③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
야 한다.

1.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
다 1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
년 이내에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
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교
육을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면제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직전에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해에 전문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u>제31조의3</u> ~ <u>제31조의5</u> (생략) <u>제31조의6</u>(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u>제31조의7제2항</u>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u>제31조의7</u> (생략) <신설>	<u>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31조의4</u> ~ <u>제31조의6</u> (현행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와 같음) <u>제31조의7</u>(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제31조의8제2항</u>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8</u> (현행 제31조의7과 같음) <u>제33조</u>(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	--

	<u>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항에 따</u> <u>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u> <u>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u> <u>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u> <u>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u> <u>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u> <u>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u> <u>한다.</u>
--	---